

| 글. 김창길_ Kim, Chang-gil

· 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공공의 역할, 신뢰받는 건축사의 위상을 기대하며

Architects carrying out public roles ;
expecting a creditable position.



경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주)창우정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실무를 쌓았다. 주요 작업으로는 변동 글로리아워, 부산 락앤스티치공장, 박순용 정형외과, 춘천감정리주택, 화성 조암리주택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11년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2012년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2년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2012년신진건축사상을 수상하였다.

인천시건축사회가 수년간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50여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해 왔던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다. 권익위는 지난 2월 6일 인천시건축사회가 인천시와 강화군 등 군·구(기관)로부터 수탁 받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2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건축사회는 이와 함께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22만1000원~390만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로부터 받아 총 약 55억원을 추가 징수, 그 부담을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전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관에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나 감리자로부터 징수한 약 12억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우선 반환토록 조치하고 인천시건축사회가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수탁 받은 인천시건축사회가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인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도록 ‘인천시 건축조례’에 명시할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권익위의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해당지역의 건축사회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말로 건축사회를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인지 오히려 권익위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 얼마나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해야 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는 지급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관련 비용체계도 없어 전국의 지자체 업무대가 기준이 모두 다르며, 이 또한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각 지자체에서 정당한 업무대가 기준을 만들어서 건축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권익위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지자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건축사회에게 책임을 묻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정부는 건축설계산업을 5년 내에 세계 5위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건축선언을 기반으로 '서울건축선언'을 선포했다. 그 주역은 건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축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축문화가 발전하려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개선해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법규도 소중하게 지키는 실천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당장이라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얼마 전, 전국 지자체의 인허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건축통합기준'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은 행정 편의에 있어서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번 일을 계기로 행정 편의를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0㎡미만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으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건축물의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현장조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용승인과 관련해서는 접수시점도 전국이 다 다르다. 어떤 지자체는 사용승인 전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 사용승인 접수 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전국의 서로 다른 규정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만 야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국의 지자체가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규정을 통합하여 통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사로서, 신뢰받는 건축사로서, 그동안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건축사가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건축문화 발전을 만들어가는 작은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에... ㉞